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개정사항 안내



! 안전·보건조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'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'이 개정되었습니다. <2021.11.19.시행>

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조치 강화(제672조)

신규 추가된 직종

교육의무 대상

[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]

<p>10 방문판매원</p>	<p>11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</p>	<p>12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</p>	<p>13 화물차주 (수출입 컨테이너, 시멘트, 철강재, 위험물질 운송)</p>	<p>14 소프트웨어 기술자</p>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잠깐! 방문판매원,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,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들에 대해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 [시행규칙 별표4]

안전보건 조치 예시

- ▲ 휴게시설 설치
- ▲ 고객 폭언 등 대응지침 제공 및 교육 실시 등
- ▲ 중량물의 제한
- ▲ 추락의 방지
- ▲ 보호구 지급·관리
- ▲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
- ▲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
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·보건조치 일부를 표기하였으므로, 전문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」 참조

2 리프트 종류에 산업용 리프트 규정(제132조제2항)

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('20.1.16.) 시 삭제되었던 '일반작업용 리프트'를 '산업용 리프트'로 명칭 변경하여 복원

산업용 리프트?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

3 구내운반차 차량규격* 기준 삭제(제184조제3호)

현행 안전보건규칙상 기준(65cm)과 한국산업표준·국제표준(46cm 이하)이 상이하하여 삭제

*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까지 거리

4 고압·저압 기준 정정(제302조, 제304조)

— 개정된 전기사업법(한국전기설비규정)에 따라 접지 시 고압기준 및 누전차단기 설치 시 저압기준 정정

고압 기준

- 직류전압(DC) 750V 초과, 7,000V 이하 → **1,500V 초과**, 7,000V 이하
- 교류전압(AC) 600V 초과, 7,000V 이하 → **1,000V 초과**, 7,000V 이하

저압 기준

- 직류전압(DC) 750V 이하 → **1,500V 이하**
- 교류전압(AC) 600V 이하 → **1,000V 이하**

5 유해물질 취급 관련 서류 내용 및 보존의무 정비(제439조, 제468조, 제509조)

— 유해물질(특별관리물질, 허가대상 유해물질, 금지유해물질) 취급시 사업주가 기록·보존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 내용 및 해당 서류 보존의무(3년) 규정(법 제164조제1항제3호 관련)

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 취급하는 경우

- 1 근로자 이름
-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
- 3 취급량
- 4 작업내용
-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
- 6 누출, 오염,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

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·사용하는 경우

- 1 근로자 이름
- 2 허가대상 유해물질의 명칭
- 3 제조량 또는 사용량
- 4 작업내용
-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
- 6 누출, 오염,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

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 제조·사용하는 경우

- 1 근로자 이름
- 2 금지유해물질의 명칭
- 3 제조량 또는 사용량
- 4 작업내용
- 5 작업시 착용한 보호구
- 6 누출, 오염,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

6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·시행 기준 개정(제517조)

(현행)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 90dB 초과 시

(개정) '법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기준' 중 소음 노출기준 초과 시

※ 작업시간에 따라 기준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



지붕 작업, 달비계 작업, 벌목 작업 개정사항 및 안전수칙도
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에서 확인하세요!



QR코드로 확인!